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522호
2019. 5. 30.(목)



목 차

◆ **자치법규**

[규 칙]

제4275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

제4276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6

제4277호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10

제4278호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1

제4279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3

제4280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4

제4281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15

제4282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7

제4283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28

제4284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31

[입법예고]

제2019-1523호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74

제2019-1526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5

제2019-153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76

제2019-1543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7

◆ **고 시**

제2019-159호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 78

제2019-160호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121

제2019-161호 정비사업의 표준 공동사업시행협약서 172

제2019-166호 영등포 당산동2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200

제2019-16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고시 207

제2019-168호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209

◆ 서울특별시규칙 제4282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중 “법 제12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제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용인”은 허가재산을 수익 목적의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시민이 해당 시설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사용목적) ① “임차자”는 대부를 받은 재산(이하 “대부재산”이라 한다)을 ○○○○ 목적으로 사용한다.

② “임차자”는 대부재산을 수익 목적의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시민이 해당 시설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이 공유재산을 수익 목적의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결제시스템을 구비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사항(’19. 3. 28. 시행)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이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나 대부를 받아 수익 목적의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시민이 해당 시설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

나.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해당 조항 삭제(현행 제6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4283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굴착 깊이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나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는 제외한다.

제4조 중 “처리할 수 있다”를 “처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외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이하 “조정 신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 제56조 제1항에 따라 도로 소재지 관할 자치구청장(이하 “관할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